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09.09.14 ( 월 10:30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#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9월 1일
- 회부일자 : 2009년 9월 4일

3. 제안 이유

-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본 조례의 미비점 등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(안 제 3조 ~ 안 제7조)
-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(안 제7조)

-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·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(안 제9조 ~ 안 12조)
- 사회적기업 등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(안 제13조, 안 제 14조)
-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제출 의무 규정(안 제16조)
-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사항 규정(안 제17조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'은 그동안 시행된 조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문을 대폭 수정·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  
- 다만,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